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0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 김성준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기덕, 김인제, 김종길, 김혜지,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옥, 이승미, 이영실,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시내버스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안전 점검시 연료용기(CNG, 수소), 전기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 연료용기, 전기배터리 부분 보완하여 반영

나.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9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투명성을 높이기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⑥·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안전점검에 차량별 연료용기, 전기배터리 부분을 보완하여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